

환경부령 제

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거주한 자**”를 “**거주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를 “**거주하여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상속에 따라 원거주민의 가업을 승계하거나 원거주민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가업을 승계하고 증여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서**”로, “**승계한 자**”를 “**승계한 사람 1인**”으로 한다.

제12조제2호가목1)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옥상**”을 “**옥상 및 주택의 대지**”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경우**”를 “**경우(거듭하여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목까지**”를 “**사목까지 및 차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2조제2호가목에 따른 부대창고 또는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이 경우 용도변경 면적과 기존주택의 면적(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제2호가목 후단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주민공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증축·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용도변경**”을 “**용도변경.**”로 하며,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교법인이 기존공장·주택(부대창고 또는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의 용도변경을 포함하여 연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제2호라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를 “**경우로서 하나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건축물 연면적은**”을 “**바닥면적 합계는**”으로,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로 하며, 같은 1) 가) 중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매주 1회**”를 “**매주1회**”로 하고, 같은 1) 나) 중 “**하수종말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건축물**”을 “**건축물(공장·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는 제외)**”로, “**증축.**”를 “**증축**”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방앗간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사무실 또는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용도변경 이후 다항의 건축물

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수의 환경기준 등에 적합여부 평가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한 자료의 연간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히 취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기상상태에서 7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의 수질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별표 1의 수질등급 취수량 취수비율(호소수의 경우) 개발잠재력의 평점의 기호(-)란 중 “01”을 “0.1”로 한다.

별표 6의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역 및 지방 상수 도

별표 6의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역 및 지방 상수	가. 하천수, 복류수, 강변여 과수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총인,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분기 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페닐,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	3월, 6월, 9월, 12월

도			알데히드(formaldehyde),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나. 호소수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총유기탄소, 총인, 클로로필-a,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분기 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히드(formaldehyde), 헥사클로로벤젠,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3월, 6월, 9월, 12월
	다. 지하수	반기 마다 1회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플루오린(불소, fluorine),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철,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마. 해 수	분기 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총유기탄소,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매년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보론(붕소, boron), 수은, 납, 크로뮴(chromium)	

별표 6의 마을 상수도 · 전용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마을 상수도
· 전용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별표 6에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의 표류수

별표 6 제2호의 측정항목란 중 “부유물질량”을 “총유기탄소, 부유물질량”으

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측정항목란 중 “크롬”을 “크로뮴(chromium)”으로, 같은 란 중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호소수

별표 6 제2호의 측정항목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측정항목란 중 “크롬”을 “크로뮴(chromium)”으로, 같은 란 중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하수

별표 6 제2호의 측정항목란 중 “크롬”을 “크로뮴(chromium)”으로, 같은 란 중 “불소”를 “플루오린(불소, fluorine)”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수

별표 6 제2호의 측정항목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측정항목란 중 “보론”을 “보론(붕소, boron)”으로, 같은 란 중 “크롬”을 “크로뮴(chromium)”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불소”를 “플루오린(불소, fluorine)”으로, “보론 및 지하수항목 :”을 “보론(붕소, boron) 및 지하수항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측정항목 :”을 “측정항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질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원거주민(原居民)”이란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를 말한다.	4. ----- ----- ----- ----- <u>사람을</u> -----.
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u>자</u>	가. ----- ----- <u>사람</u>
나.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u>자로서</u>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u>거주한 자</u>	나. ----- ----- <u>사람으로서</u> ----- ----- <u>거주한 사람</u>
다.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u>자로서</u>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u>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u>	다. ----- ----- <u>사람으로서</u> ----- ----- <u>거주하여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상속에 따라 원거주민의 가업을 승계하거나 원거주민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가업을 승계하고 증여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서</u> --- <u>승계한 사람 1인</u>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활기반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垔)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2)·3) (생략)

나. (생략)

3. (생략)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

1. (현행과 같음)

2. -----

가. -----

1) -----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제곱미터 -----

-

2)·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
의 시설

가. ~ 라. (생 략)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
른 산림조합, 「농업·농촌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
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
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
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
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
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
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바. ~ 아. (생 략)

5.·6. (생 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
에너지 설비

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의 옥상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영농조합법인(營農
組合法人)·농업회사법인(農
業會社法人)-----

바. ~ 아.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7. -----

가. -----
- 옥상 및 주택의 대지

나. (생 략)

8. (생 략)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
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3.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
트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
국, 정육점, 노인·어린이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제12조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
지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
우

5. (생 략)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
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
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
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
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

나.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

-----.

1. 2. (현행과 같음)

3. ----

경우(거듭하여 용도변경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4. ---- 사목까
지 및 차목-----

5. (현행과 같음)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

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생략)

2.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활기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

1. (현행과 같음)

2. 공공하수처리시설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공하수처리시설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

-----.

1. -----

가.·나. (생략)

<신설>

다.·라. (생략)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
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
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
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
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
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목욕장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공장·주택의 목욕
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
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
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12조제2호가목에 따른 부
대창고 또는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 경우
용도변경 면적과 기존주택의
면적(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
경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합
계는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
한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라.·마.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

2. -----

가. -----

----- 한정한다(주민
공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증축·용도변경을 하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후단 신설>

다. (생략)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 1)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

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

----- 용도변경. 이 경우 종교법인이 기존공장·주택(부대창고 또는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의 용도변경을 포함하여 연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

1) -----

----- 경우로서 하나의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는 -----

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시·도지사가 해당 환
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
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
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
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류수수질을 6
개월 동안 매주 1회 측
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특정지역기
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
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
(戶數)의 10퍼센트

나)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
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
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
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퍼센트

-----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가) -----

----- 공
공하수처리시설-----

----- 매주1회 --

나) -----

----- 공공하
수처리장-----

다) (생략)

- 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신 설>

제24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는 평상시의 기상상태에서 7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행과 같음)

- 2) -----
----- 건축물(공장·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는 제외)----- 증축

마. 방앗간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사무실 또는 소매점 등의 용도변경. 이 경우 용도변경 이후 다량의 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원수의 수질검사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원수의 환경기준 등에 적합여부 평가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한 자료의 연산술평균값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히 취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기상상태에서 7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채취한 원수의 수질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